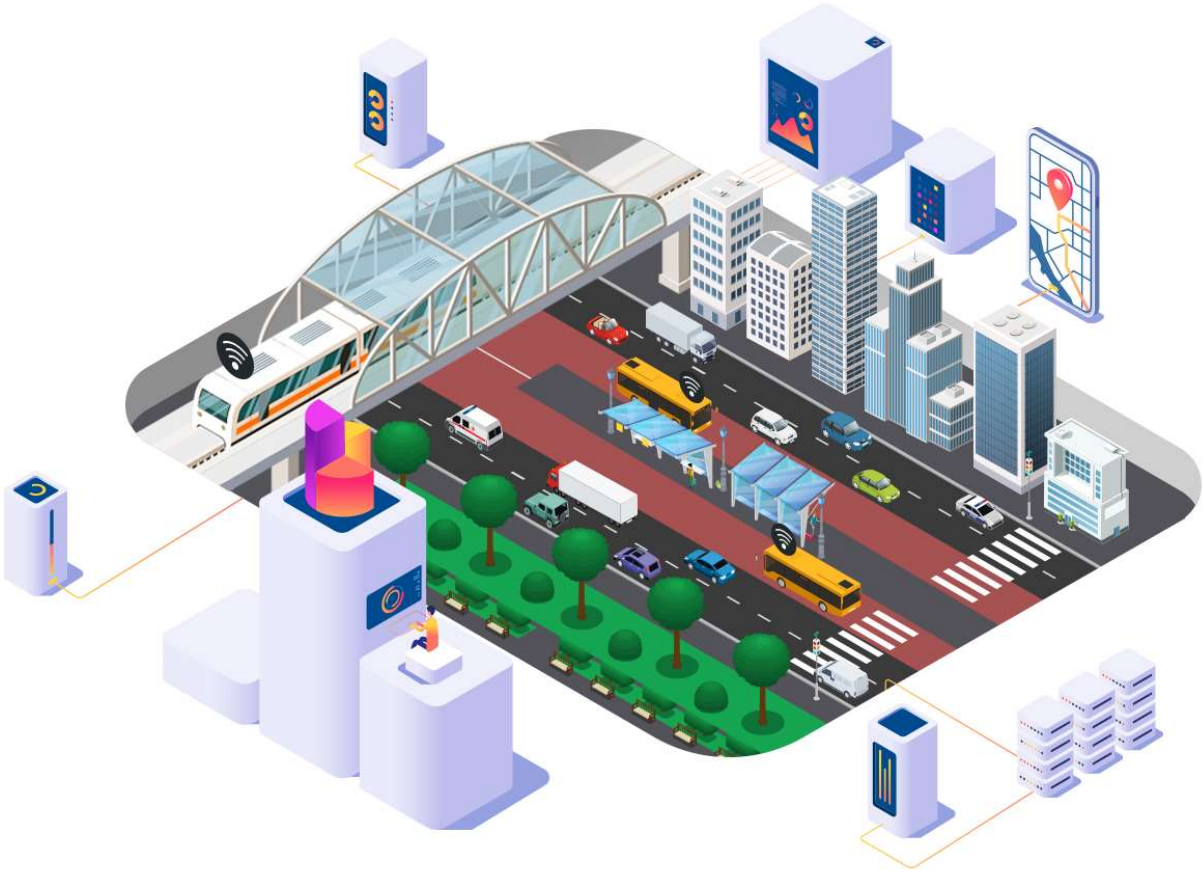
중간보고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2023. 12.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Contents



Ⅰ Chapter 과업의 개요

Ⅱ Chapter 전라북도 여건 및 전망

Ⅲ Chapter 제3차 전라북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Ⅳ Chapter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Ⅴ Chapter 향후 추진일정

0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02 과업의 법적검토
03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Chapter I

과업의 개요



0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배경

• 전라북도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임

•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목적

•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지원방향을 제시

•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전라북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3차 지원계획의 시간적 범위	제4차 지원계획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9년 ~ 2023년(5년)	• 계획기간 : 2022년 ~ 2026년(5년)

• 제4차 지원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 ~ 2028년이나 국가계획과 시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

공간적 범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02. 과업의 법적검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 2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 2023. 7. 19.][법률 제1874호, 2022. 1. 18., 일부개정] >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 포함사항"

★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관리 지원** 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 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03.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기 초 조 사

현황 및 여건 분석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 교통약자 현황 분석
- ❖ 장래 교통약자 전망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보행환경진단
- ❖ 시·군별 제4차 기본계획 활용
 - 시·군별 실태조사
 - 시·군별 주민 만족도 조사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성과분석
- ❖ 제3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
- ❖ 미 추진 및 부진사항 파악 및 조치

문제점진단 및 시사점 도출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제4차 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 ❖ 계획 수립의 비전 및 목표
 -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
- ❖ 부문별 핵심전략과제 설정
 - 시·군별 이동편의 환경 개선 목표 반영

5개년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전략
-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기준
- ❖ 이동편의시설 지원계획
-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추가 도입

비용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01 전라북도 교통약자 통계 현황

02 전라북도 교통약자 장래 예측

03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실태

Chapter II

전라북도 여건 및 전망



01. 전라북도 교통약자 통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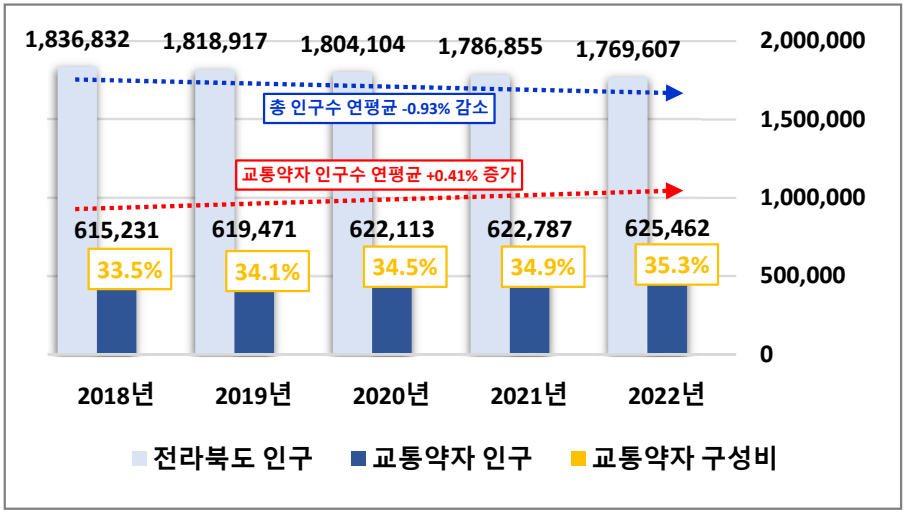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인구는 다소 증가하고 있음
-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35.3%이며 이 중 고령자가 교통약자 인구의 6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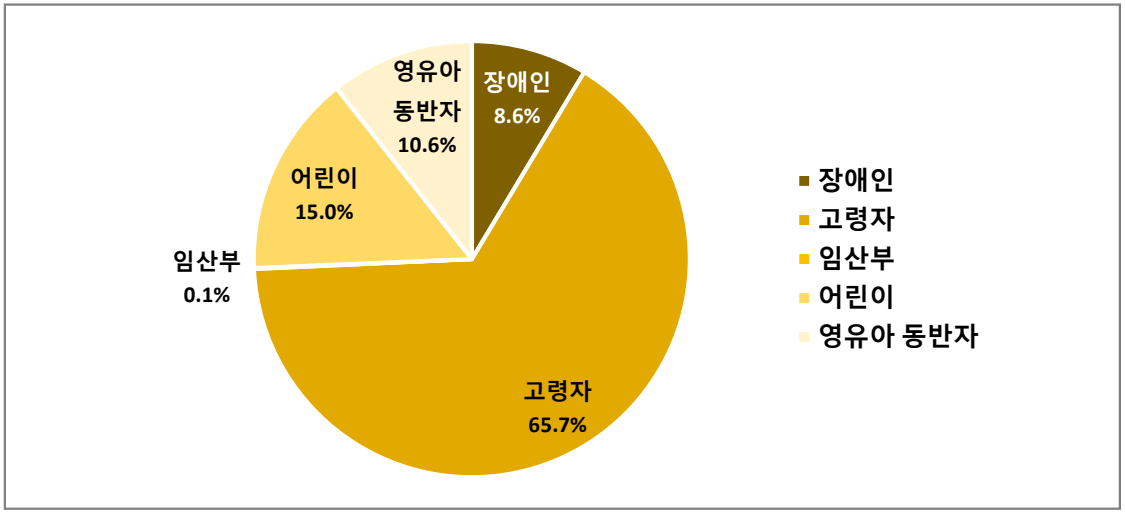
전라북도 인구 및 교통약자 추이

구분	총 인구(인)	교통약자(인)	연평균증가율(%)
2018년	1,836,832	615,231	전라북도 인구 감소율 -0.93%
2019년	1,818,917	619,471	
2020년	1,804,104	622,113	
2021년	1,786,855	622,787	교통약자 인구 증가율 +0.41%
2022년	1,769,607	625,462	

전라북도 교통약자 현황(2022년)

구분	인구수(인)	총인구대비비율(%)	교통약자 비율(%)
총 인구 수	1,769,607	100.0	-
일반인	1,144,145	64.7	-
교통약자	625,462	35.3	100.0
장애인	53,896	3.0	8.6
고령자	**410,619**	**23.2**	**65.7**
어린이	93,794	5.3	15.0
임산부	554	0.1	0.1
영유아동반자	66,599	3.7	10.6







01. 전라북도 교통약자 통계 현황

- 전라북도의 인구는 **전주시, 익산시 및 군산시** 등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라북도의 교통약자는 인구가 밀집한 **시·군 외 지역의 교통약자 비율이 비교적 더 높음**

시 · 군별 교통약자 현황(2022년)

구분	인구 수(인)	교통약자							
		인구 수(인)	비율(%)		장애인(중복제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전주시	**651,495**	**192,445**	**29.5%**		**16,214**	**107,357**	**28,766**	**39,899**	**209**
군산시	**262,467**	**88,634**	**33.8%**	**32.4%**	**7,630**	**54,997**	**10,562**	**15,359**	**86**
익산시	**273,697**	**92,475**	**33.8%**		**8,728**	**60,045**	**9,548**	**14,054**	**100**
정읍시	105,081	43,116	**41.0%**		3,850	31,356	3,180	4,703	27
남원시	77,948	32,682	**41.9%**		2,889	23,691	2,603	3,478	21
김제시	81,455	36,026	**44.2%**		3,104	27,495	2,268	3,136	23
완주군	92,422	35,093	**38.0%**		3,375	22,950	3,673	5,063	32
진안군	24,550	11,651	**47.5%**		949	9,260	655	785	2
무주군	23,489	10,734	**45.7%**	**44.8%**	887	8,393	550	899	5
장수군	21,336	10,006	**46.9%**		762	7,852	556	831	5
임실군	26,508	12,957	**48.9%**		1,018	10,270	853	803	13
순창군	26,727	12,267	**45.9%**		905	9,647	756	956	3
고창군	52,338	24,540	**46.9%**		1,847	19,364	1,359	1,958	12
부안군	50,094	22,836	**45.6%**		1,738	17,942	1,270	1,870	16
합계	1,769,607	625,462	**35.3%**		53,896	410,619	66,599	93,794	554



02. 전라북도 교통약자 장래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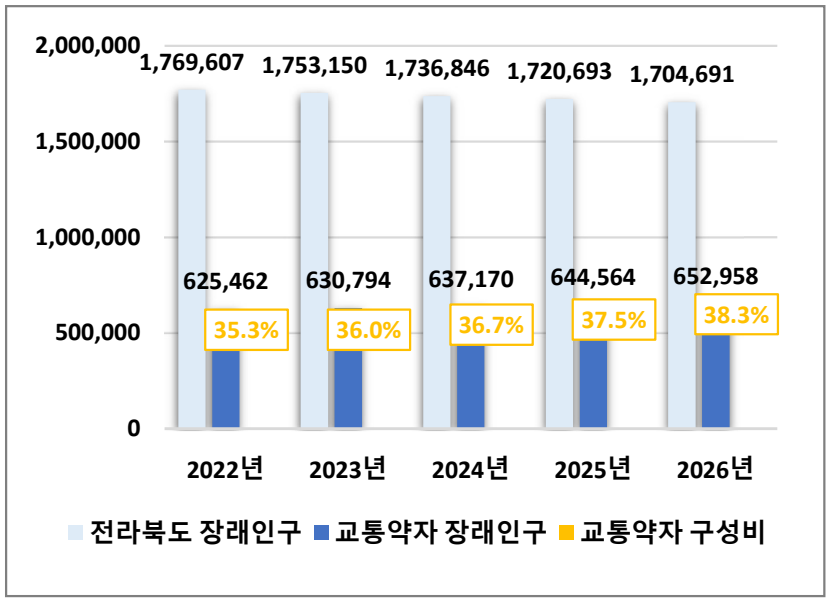
• 전라북도 교통약자 장래예측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장래인구는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교통약자 수요전망을 통해 적정한 시설 및 재원투입이 반영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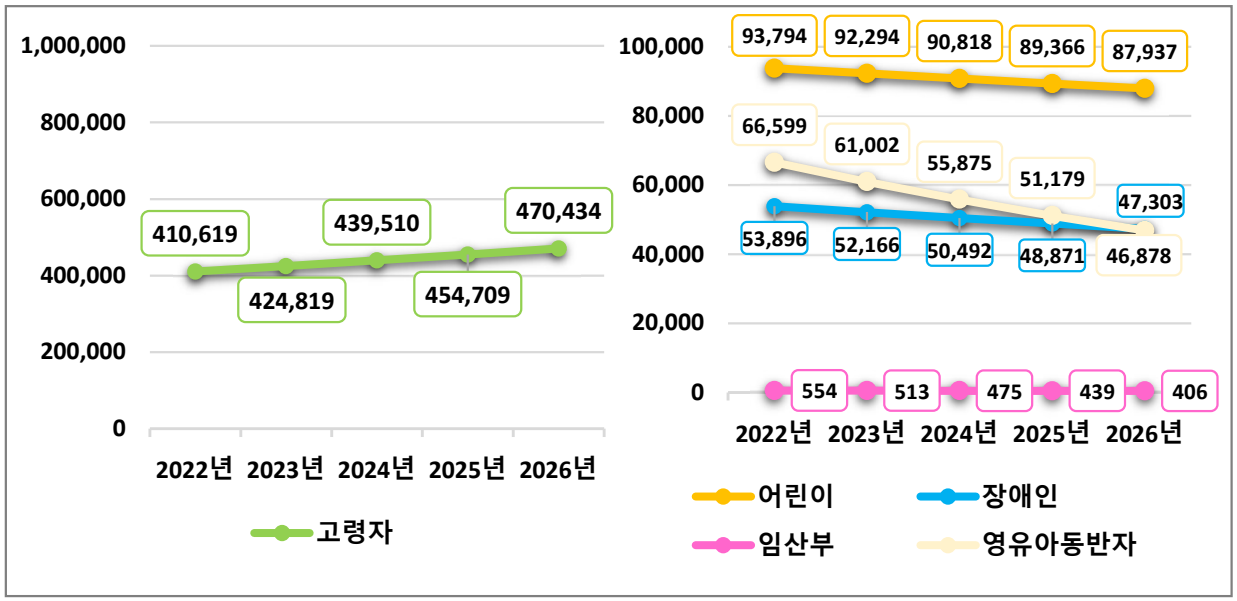
전라북도 인구 및 교통약자 전망

연도	전라북도 장래인구(인)	장래 교통약자		연평균 증가율(%)
		인구(인)	비율(%)	
2022년	1,769,607	625,462	35.3	전라북도 장래인구 감소율 +0.93% 교통약자 장래인구 증가율 +1.08%
2023년	1,753,150	630,794	36.0	
2024년	1,736,846	637,170	36.7	
2025년	1,720,693	644,564	37.5	
2026년	1,704,691	652,958	38.3	

장래 교통약자 예측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증가율(%)
장애인	53,896	52,166	50,492	48,871	47,303	-3.21%
고령자	410,619	424,819	439,510	454,709	470,434	+3.46%
임산부	554	513	475	439	406	-7.48%
어린이	93,794	92,294	90,818	89,366	87,937	-1.60%
영유아동반자	66,599	61,002	55,875	51,179	46,878	-8.40%
합계	625,462	630,794	637,170	644,564	652,95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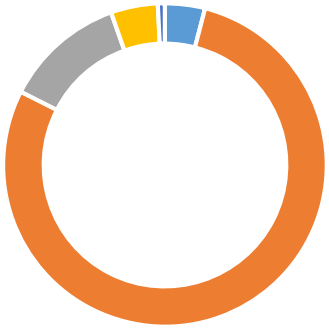
주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통계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약자별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 후 장래 교통약자를 예측하였음



03.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실태

• 전라북도 내 교통약자 이동실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내 **외출빈도는 5~6회**, 주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으며, 지역간 외출빈도는 **5회 미만**, 주 이용 교통수단 또한 **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지역내 외출빈도(주간)



- 매일외출함 4.0%
- 5~6회 78.5%
- 3~4회 12.1%
- 1~2회 4.7%
- 거의없음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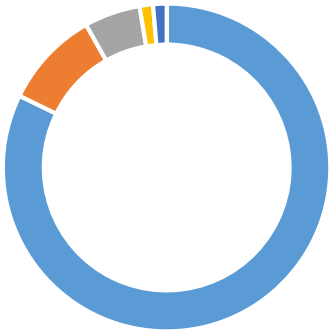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지역간 외출빈도(월간)



- 10~15회 미만 7.4%
- 5~10회 미만 23.5%
- 5회 미만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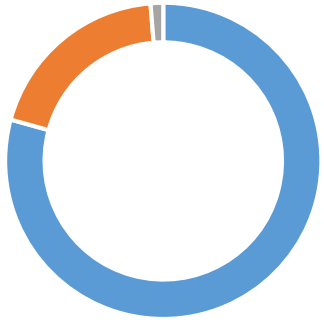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



- 버스 4.0%
- 승용차 78.5%
- 무료 셔틀버스 12.1%
- 도보/휠체어 4.7%
- 택시 0.7%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지역간 주 이용 교통수단



- 승용차 79.2%
- 고속버스 19.5%
- 기차 1.3%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01 제3차 전라북도 지원계획 검토

02 제3차 전라북도 지원계획 성과분석

03 시·군별 증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hapter III

제3차 전라북도 지원계획 추진성과



01. 제3차 전라북도 지원계획 검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책의 추진성과 분석은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서 제시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목표치가 실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 「 제4차 전라북도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제3차 전라북도 이동편의시설 목표치

교통수단	버스차량, 도시 및 광역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90.0%
여객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	80.0%
보행환경	보도, 지하보도 및 육교	84.5%

시 · 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구분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전체평균
전주시	77.7%	71.7%	65.5%	71.6%
익산시	85.3%	67.1%	59.9%	70.8%
정읍시	59.3%	73.2%	69.1%	69.6%
남원시	91.1%	83.3%	95.0%	89.8%
김제시	68.7%	54.3%	64.8%	60.8%
임실군	55.7%	42.6%	53.3%	50.0%
순창군	63.6%	39.6%	63.6%	55.6%
고창군	80.0%	60.0%	70.0%	70.0%
부안군	41.7%	47.5%	69.9%	62.0%

자료 : 전라북도내 시 · 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 : 미 수립된 지자체는 제외하였음(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전라북도 시 · 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추진성과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에서 남원시를 제외한 모든 시 · 군이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02. 제3차 전라북도 지원계획의 성과분석

• 제3차 전라북도 지원계획은 제3차 국가계획보다 목표치를 상향하여 **교통수단 : 90.0%, 여객시설 : 80.0%, 보행환경 : 84.5%**로 설정하였으나, 추진성과 분석 결과 전라북도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교통 수단 : 69.2%, 여객시설 : 59.9%, 보행환경 : 66.7%**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라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종합

대상시설	3차계획 목표		실적	달성률
	국가계획	전라북도		
교통수단(평균)	80.2%	90.0%	69.2%	76.9%
여객시설(평균)	79.8%	80.0%	59.9%	74.9%
보행환경(평균)	81.0%	84.5%	67.9%	83.9%
전체평균	80.1%	85.0%	66.7%	78.5%

자료 : 전라북도내 시 · 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 : 미 수립된 지자체는 제외하였음(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2. 전라북도 제3차 지원계획의 성과분석

전라북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대상시설	3차계획 목표		실적	달성률
	국가계획	전라북도		
교통수단(평균)	70.0	82.5	58.9	71.4
여객시설(평균)	75.0	85.0	58.1	68.4
보행환경(평균)	70.0	80.0	59.8	74.8
전체평균	71.7	82.5	58.9	71.4

자료 : 전라북도내 시 · 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 : 미 수립된 지자체는 제외하였음(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라북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성과

• 전라북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제3차 계획 목표에서 국가계획 대비 높은 만족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동편의시설 모든 부분에 전라북도 도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01 계획의 비전과 목표

0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04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05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Chapter IV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01.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라북도, 다같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균형적인 시·군 지원방안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지원전략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이동편의 시설 인프라 개선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저상버스 보급확대 지원	물리적 장애없는 환경조성	교통약자 캠페인 추진지원	광역이동센터 운영 효율화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지원 확대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강화	교통약자 조례 정비
바우처 택시 도입 검토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0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전라북도 저상버스 현황

구분	전체 운행버스	저상버스	저상버스비율
시내버스	843대	239대	28.4%
마을버스	46대	-	-
농어촌버스	147대	4대	2.7%
총 계	1,036대	243대	23.5%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3. 08 기준)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

구분	도입 목표		부족분	
	대수	비율	대수	비율
시내버스	346대	41.0%	107대	12.6%
마을버스	23대	49.0%	23대	49.0%
농어촌버스	62대	42.0%	58대	39.3%

자료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

- 4차 국가계획 도입률 대비 시내버스는 107대, 마을버스는 23대, 농어촌버스는 58대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부족분에 대한 연차별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전라북도 저상버스 제4차 국가계획 충족 연차별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시내버스	-	20대	29대	29대	29대	107대
마을버스	-	-	8대	8대	7대	23대
농어촌버스	-	5대	18대	18대	17대	58대
총 계	-	25대	55대	55대	53대	188대

- 일부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등 농어촌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



0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현 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5.] [법률 제637호, 2019. 7. 5., 일부개정]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 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 특별교통수단 " 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 정 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법률 제1235호, 2023. 7. 20., 일부개정]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 · 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 · 군" 이라 한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 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 · 군의 경우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2023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충족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2024년에 법정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구분	인구수	보행상 정도가 심한장애(A)	법정기준 현황	법정대수 현황	특별교통수단 현황	도입률 현황
전주시	651,495	9,099	150명당 1대	61대	62대	101.6%
군산시	262,467	4,593		31대	31대	100.0%
익산시	273,697	5,943		40대	40대	100.0%
정읍시	105,081	2,677		18대	18대	100.0%
남원시	77,948	1,943		13대	13대	100.0%
김제시	81,455	2,381		16대	16대	100.0%
완주군	92,422	2,156		14대	14대	100.0%
진안군	24,550	635		4대	4대	100.0%
무주군	23,489	560		4대	4대	100.0%
장수군	21,336	498		3대	3대	100.0%
임실군	26,508	766		5대	5대	100.0%
순창군	26,727	706		5대	5대	100.0%
고창군	52,338	1,405		9대	9대	100.0%
부안군	50,094	1,368		9대	9대	100.0%
합계	**1,769,607**	**34,730**	**-**	**232대**	**233대**	**100.4%**

구분	인구수	보행상 정도가 심한장애(A)	법정기준 개정 후	법정대수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현황	도입률 개정 후
전주시	651,495	9,099	150명당 1대	61대	62대	101.6%
군산시	262,467	4,593		31대	31대	100.0%
익산시	273,697	5,943		40대	40대	100.0%
정읍시	105,081	2,677		18대	18대	100.0%
남원시	77,948	1,943	100명당 1대	19대	13대	68.4%
김제시	81,455	2,381		24대	16대	66.7%
완주군	92,422	2,156		22대	14대	63.6%
진안군	24,550	635		6대	4대	66.7%
무주군	23,489	560		6대	4대	66.7%
장수군	21,336	498		5대	3대	60.5%
임실군	26,508	766		8대	5대	62.5%
순창군	26,727	706		7대	5대	71.4%
고창군	52,338	1,405		14대	9대	62.3%
부안군	50,094	1,368		14대	9대	62.3%
합계	**1,769,607**	**34,730**	**-**	**275대**	**233대**	**84.7%**



0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는 233대이며**, 2024년「교통약자법」개정 후 법정기준대수 대비 **42대가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됨
-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설정하여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85대를 충원, 총318대 도입률 115.6%**로 설정하였음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연차별 계획

구분	특별교통수단 현황	법정대수	법정대비 부족대수	확충계획					특별교통수단 누적대수	도입 비율 (2026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주시	62대	61대	+1대	-	1대	3대	2대	2대	70대	114.8%
군산시	31대	31대	-	-	3대	1대	1대	1대	37대	119.4%
익산시	40대	40대	-	-	4대	6대	6대	6대	62대	155.0%
정읍시	18대	18대	-	-	-	-	-	-	18대	100.0%
남원시	13대	19대	-6대	-	3대	2대	3대	3대	24대	126.3%
김제시	16대	24대	-8대	-	-	3대	3대	2대	24대	100.0%
완주군	14대	22대	-8대	-	3대	1대	2대	2대	22대	100.0%
진안군	4대	6대	-2대	-	-	1대	1대	-	6대	100.0%
무주군	4대	6대	-2대	-	-	1대	1대	-	6대	100.0%
장수군	3대	5대	-2대	-	-	1대	1대	-	6대	100.0%
임실군	5대	8대	-3대	-	-	-	2대	1대	13대	100.0%
순창군	5대	7대	-2대	-	-	2대	-	-	7대	100.0%
고창군	9대	14대	-5대	-	1대	2대	2대	1대	15대	107.1%
부안군	9대	14대	-5대	-	-	2대	2대	1대	14대	100.0%
합계	**233대**	**275대**	**42대**	**-**	**15대**	**25대**	**26대**	**19대**	**318대**	**115.6%**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및 시 · 군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0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확대

바우처택시 도입의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해마다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음**
- 따라서,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정 등 운영 효율화 및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도입) 필요**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비교

구분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전용계약형	비전용계약형	
통제권	이동지원센터	사업자	사업자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택시요금의 일정비율 바우처로 보조
장점	안정적인 배차 · 운행	일반인대상 영업가능 운영비 절감	일반택시 활용, 운영비 절감효과 큼
단점	일반인대상 영업불가	장애인 배차 비선호	비장애인 편법이용 가능성 존재
운영사례	수원시, 전라북도(8개 시·군)등	용인시, 화성시, 의정부시 등	서울시, 고양시, 전라남도 등

- 임차택시(전용계약형, 비전용계약형)는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 안정성 및 요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나, 시 · 군의 비용부담에 따라 확장성에 한계가 존재, 운행보조금 지급 방식의 바우처택시 확대는 운영기관의 비용절감 및 공급확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단됨
- **지자체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를 분산 처리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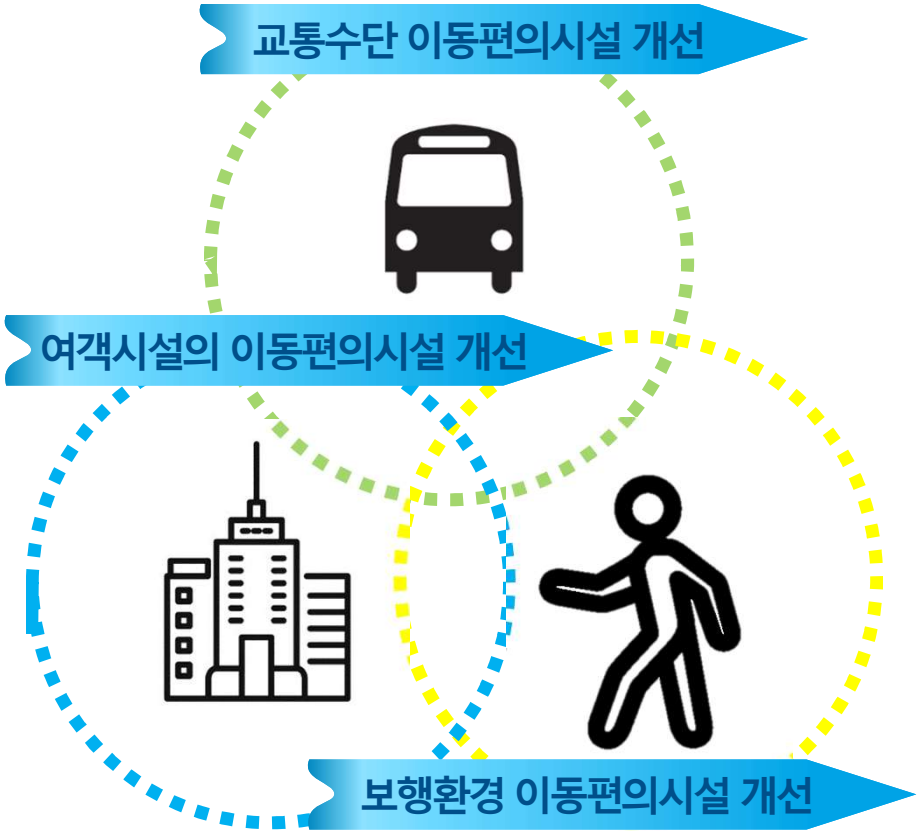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약자의 관점에 맞는 교통서비스 환경조성과 물리적 이동장벽의 해소를 목표로 개선방안 제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지원계획



제4차 전라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수단 및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교통수단	시내버스	96.0%
	도시(광역)철도	98.0%
	항공기	90.0%
	여객선	52.0%
교통수단 평균		84.0%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73.0%
	도시(광역)철도역사	93.0%
	공항여객터미널	92.0%
	여객선터미널	92.0%
여객시설 평균		87.5%
도로(보행환경)		73.0%
전체평균		84.3%

주 :「제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된 이동편의 시설 목표치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

-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률 평균 목표는 84.0%**로 설정
- 자동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등 낮은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이는 항목들을 **전라북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전라북도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결과

점검항목	기준적합	미적합	미설치
자동안내시설	45.8	45.8	8.5
전자문자안내판	51.3	16.7	32.0
목적지표시	80.3	19.7	0.0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100.0	0.0	0.0
승강구	100.0	0.0	0.0
교통약자용 좌석	73.0	11.5	15.5
수직손잡이	95.1	0.7	4.2
장애인접근가능표시(저상)	100.0	0.0	0.0
전라북도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평균	80.7	11.8	7.5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여객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률 목표는 평균 87.5%**로 설정
- 버스정보조회 버튼,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 등 교통약자의 유도시설과 이용정보 편의 제공에서 매우 낮은 적합률을 보여 개선이 시급하며,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하여 개선방안 수립필요**

전라북도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결과

구분	설치기준	적합	미적합	미설치
턱 낮추기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 15cm이하	36.0	64.0	0.0
활동공간	0.8m이상 확보 및 1.8mX1.8m 이상 회전공간 확보	51.0	32.7	16.3
동선분리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이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분리	46.0	0.0	54.0
점형블록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16.0	0.0	84.0
선형블록	점형블록과 함께 선형블록 설치	12.0	0.0	88.0
안내판부착위치	안내판을 바닥에서 1.5m안팍 설치	72.7	4.5	22.7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	안내판에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 제공	6.8	31.8	61.4
버스정보조회 버튼	바닥면으로부터 1.2m이내 설치	3.7	0.0	96.3
전라북도 평균		30.5	16.6	52.8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개선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보행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률 목표는 평균 73%**로 설정

•보행 이동편의시설에서는 차량진출입부, 점자블록,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가 매우 낮은 적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도로 · 보행환경 개선사업계획을 수립,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하여 시 ·군에서 사업추진방안 수립필요**

전라북도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 조사결과

구분	적합	미적합	미설치
보도(평균)	88.1	11.1	0.8
차량진출입부(평균)	22.7	59.1	18.2
턱낮추기(평균)	84.7	9.7	5.6
점자블록(평균)	23.5	21.1	55.4
지하도 및 육교(평균)	-	-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평균)	-	-	-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평균)	75.0	10.2	14.8
자동차 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평균)	64.6	2.1	33.3
전라북도 평균	59.8	18.9	21.3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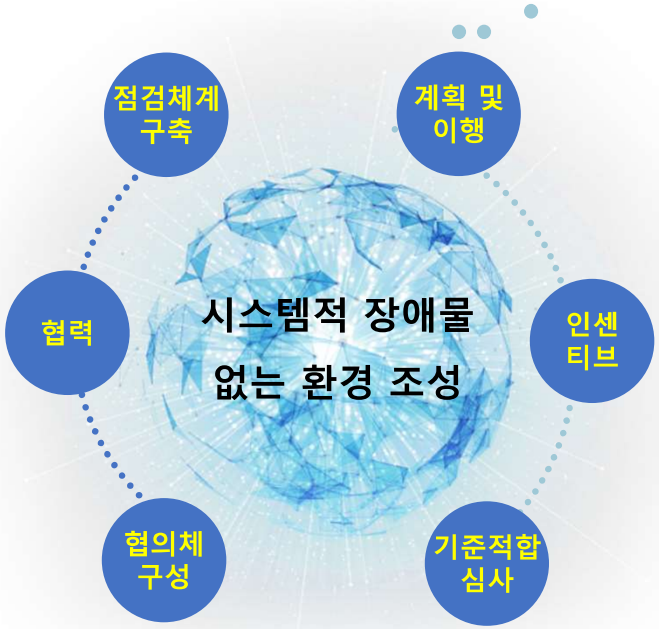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 교통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통수단 사업자, 여객시설 사업자 등 다양하나, 협력체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통복지정책 추진 저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공공과 민간, 수혜자 그룹 간의 상시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점검체계 구축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역(시 · 군)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성 · 운영



국가 · 지방 증진계획의 적기 수립 및 정합성 확보,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 개선 모범사례 발굴 · 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수단 · 여객시설 면허 · 허가 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적합여부 심사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분		운영방식	위탁기관	접수수단				운영인력 (인)
				전화	문자	홈페이지	어플	
서울특별시		위탁운영	서울시설공단	○	○	○	○	759
부산광역시		위탁운영	부산시설공단	○	X	X	○	168
대구광역시		위탁운영	대구시설공단	○	○	○	○	183
인천광역시		위탁운영	인천교통공사	○	X	○	○	205
광주광역시		위탁운영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	○	○	140
대전광역시		위탁운영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	○	○	146
울산광역시		위탁운영	(사)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	X	○	○	98
세종특별자치시		위탁운영	세종도시교통공사	○	○	○	○	29
광역센터	경기도	자체	-	○	-	○	○	-
	강원도	위탁운영	㈜케이티아이에스	○	○	○	○	16
	충청북도	-	-	-	-	-	-	-
	충청남도	위탁운영	㈜케이티아이에스	○	○	X	○	22
	전라북도	위탁운영	㈜케이티아이에스	○	X	○	○	26
	전라남도	위탁운영	(재)전남복지재단	○	○	X	○	23
	경상북도	위탁운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	○	X	18
	경상남도	위탁운영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	○	X	X	31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	○	○	95

자료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2.06



03. 이동편의시설 인프라 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개선방향

- 지역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가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 시 별도 이용자 등록이 필요하며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초례
- 따라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편의성** 및 **환승편의성** 개선 지원

추진계획

각 센터의 등록자의 정보공유를 통한
이동지원센터 통합예약시스템 구축(~24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환승 시범 서비스 시행(~2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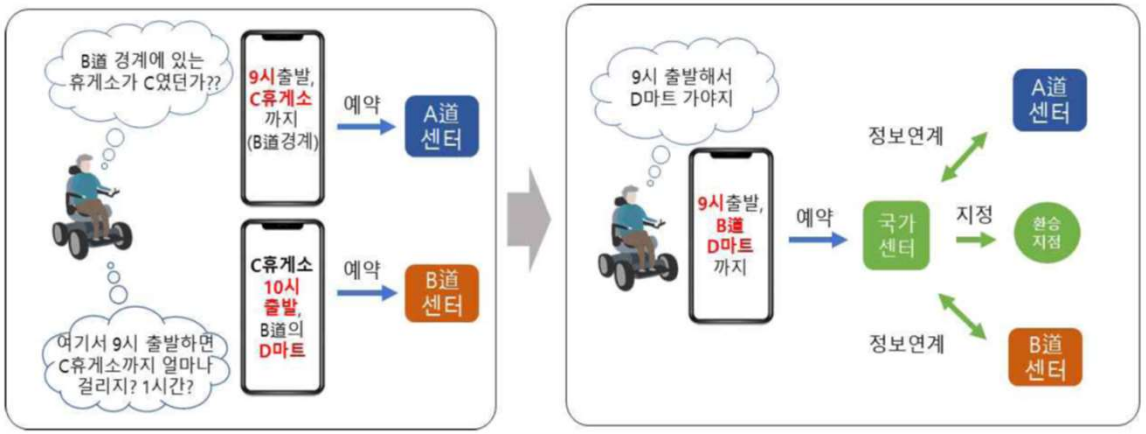
타 교통수단(철도, 시외버스 등)과의
환승 서비스 시범운영(~26년)

자료 : 국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22.09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정보 연계에 따른 이용편의성 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간 정보연계를 통한 환승편의성 개선



04.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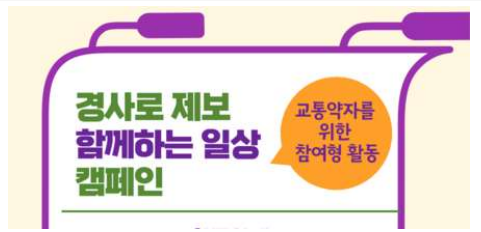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강화

-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관리강화
-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포용적 교통복지문화 조성

- 교통약자협의체를 통한 배려문화 조성

인식 개선 방안

UCC공모전	교통약자 포스터
	
언론사 캠페인방송	**시민 참여 캠페인**
	

교통약자 관련 교육

시내버스(저상) 및 여객시설

- 저상버스작동법, 배차방법
- 교통약자 이동행태
- 버스정차문화 버스운행방법 등
- 이동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법 등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작동법
- 운행방법, 운전문화
- 교통약자행태 등

교통약자 인식제고의 효과

-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대한 편견 개편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증대
 - 대중교통 불평등 해소
 - 캠페인 참여 등으로 조성된 기부금, 수익금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기금 조성 가능



05.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지원 및 조례 제정 확립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특성. 규모를 고려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 세분화 등 정비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확립하지 않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을 지원하여 조례 확립 필요
-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보급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조례 확립 필요

설치기준 정비 지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구분 (현행)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구분 세분화
버스(입석형버스(일반/저상버스))	버스(입석형버스(일반/저상버스), 중형버스, 좌석형버스(2층버스, 휠탑버스, 일반버스) 등)
철도차량(일반철도, 고속철도)	철도차량(일반철도, 고속철도)
선박	선박(차도선, 일반/고속선 등)

조례 제정 확립

구분	교통약자 조례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조례(2015.1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2019.09.30)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2.11.9)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19.11.1)
익산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23.04.14)
정읍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21.06.11)
남원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19.12.11)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1.09.17)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0.07.02)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0.12.31)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19.10.28)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23.10.02)
장수군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21.07.01)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조례(19.10.15)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19.08.01)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23.04.28)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23.01.20)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19.09.25)

주: ◌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수립되지 않은 시군임
■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임



05.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비율

타지자체 운전원 비율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서울	634	743	1.17
부산	228	228	1.00
대구	163	177	1.08
인천	215	215	1.00
광주	116	134	1.15
대전	96	121	1.26
울산	76	90	1.18
세종시	21	21	1.00
경기도	1,178	1,296	1.10
강원도	215	268	1.24
충청북도	168	159	0.94
충청남도	250	256	1.02
전라남도	201	258	1.28
경상북도	242	242	1.00
경상남도	390	461	1.18
제주도	68	84	1.23
평균	-	-	1.11

주 : 경기도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 시·군별 인력확보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을 200%를 확보하게 되어있음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전라북도	219	234	1.07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계획(2024년)

구분	특별교통수단 대수	운전원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전라북도	258	287	1.11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수 비교 검토

- 전라북도는 전국 17개 시 · 도 중 특별교통수단대비 운전원 비율이 11위, 전국 8개도중에는 6위로 확인되었음
- 현재 전국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자 비율 평균은 1.11명으로 전라북도 운전자 비율보다 0.09 높음
- 전라북도에서는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수를 전국 평균으로 맞추며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확충할 계획임

01 과업일정

Chapter V

향후 추진일정



01. 과업일정





2023. 07	2023. 08~11	2023. 12	2024. 03	2024. 04
착수보고	지자체계획 수령 및 검토	중간보고	최종보고	용역완료

제4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01.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도입기준(가이드라인)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에 대한 법적검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20.][법률 제1236호, 2023. 7. 20., 일부개정] >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설치된「도로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경우**
2.	**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도로의 시설 · 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인정 철차"

STEP1
저상버스 도입 예외 신청
- 버스운송사업자 → 교통행정기관

STEP2
검토(교통행정기관)
- 교통약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현장조사

STEP3
결과통보
- 교통행정기관 → 버스운송사업자



02.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의 비교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요금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운행범위와 권역 외 지역 운행 후 회차(왕복운행)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전국 8개도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라남도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구분		거리	요금	비고
권역내 요금	기본요금	2km	700원	2천원 이상시 2천원
	주행요금	Km 당	100원	
권역외 요금	기분요금	2km	700원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주행요금	700m 당	100원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이용자 부담		
대기료		권역 외	30분당 2,500원 (1시간 무료)	
		전라북도 외	30분당 2,500원 (2시간 무료)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금액

경기도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	초과	기본	초과
성남시	1,500원	100원/5km	1,500원	100원/5km
과천시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상한액	2,200원		없음	

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요금기준 최대, 최소 금액임

강원도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	초과	기본	초과
강원도	1,100원/4km	100원/1km	1,100원/4km	100원/1km
상한액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주: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02.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충청북도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	초과	기본	초과
괴산군	1,650원/1km	80원/137m	1,650원/1km	80원/137m
보은군	1,000원/10km	100원/1km	2,000원/20km	3,000원/군내
상한액	5,000원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주: 충청북도 특별교통수단 요금기준 최대, 최소 금액임

충청남도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	초과	기본	초과
공주시	1,600원/2km	130원/1km	1,600원/2km	260원/1km
아산시	700원/2km	130원/1km	700원/2km	260원/1km
상한액	시내버스 2배 이하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주: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 요금기준 최대, 최소 금액임

전라남도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	초과	기본	초과
전라남도	500원/2km	100원/1km	시외버스요금	
상한액	시내버스 요금(1,500원)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주: 전라남도 특별교통수단 요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경상북도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	초과	기본	초과
김천시	1,400원/2km	300원/1km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영덕군	1,000원/10km	200원/1km	관내 요금과 동일적용	
상한액	시내버스 요금 2배 이내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주: 경상북도 특별교통수단 요금기준 최대, 최소 금액임

경상남도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기본	초과	기본	초과
통영시	1,600원/2km	50원/143m	시외버스 요금	
남해군	1,000원	50원/1km (5km 초과시)	시외버스 요금 1.5배	
상한액	시내버스요금의 2배		시외버스요금의 2배	

주: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요금기준 최대, 최소 금액임





0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전라북도는 전국 8개도 대비 BF인증이 7순위로 확인되었으며, 전라북도내 BF인증순위는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등 순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전라북도는 개별시설물에 대한 BF인증 활성화가 필요**

전라북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구분	인증시설물	상세
전주시	39개소	최우수 : 1개소, 우수 : 38개소
군산시	23개소	우수 : 23개소
익산시	20개소	우수 : 20개소
정읍시	29개소	우수 : 29개소
남원시	11개소	일반 : 1개소, 우수 : 10개소
김제시	10개소	우수 : 10개소
완주군	17개소	일반 : 3개소, 우수 : 14개소
진안군	4개소	우수 : 4개소
무주군	3개소	우수 : 4개소
장수군	18개소	최우수 : 1개소, 우수 : 17개소
임실군	12개소	우수 : 12개소
순창군	16개소	우수 : 16개소
고창군	26개소	일반 : 1개소, 우수:25개소
부안군	29개소	우수 : 29개소
합계	259개소	일반 : 5개소, 우수 : 252개소, 최우수 : 2개소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타 지차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구분	인증시설물	순위
경기도	886개소	1
강원도	335개소	5
충청북도	214개소	8
충청남도	325개소	6
전라북도	259개소	7
전라남도	500개소	2
경상북도	479개소	3
경상남도	463개소	4

-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고령자 , 장애인, 임산부 및 어린이 뿐만 아니라 일시적 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일시적 사회적 약자 등이 지역 및 개별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것과 이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